KOSHA GUIDE C - 45 - 2012

- (8) 터널길이가 200m이상인 경우 막장에서 천공, 발파, 숏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분진 및 유해가스와 각 종 장비의 내연기관 배기가스 등이 막장작업구 간이외의 터널 구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장으로부터 50m이내에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터널내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진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노출기준 이하로 항상 유지되도록 환기 및 살수를 하여야 한다.

13. 터널내부의 근로자 대피소 및 차량 회차로

- (1) 터널길이가 200m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차량 계건설기계의 회차로겸 근로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(단, 터널단면의 폭이 넓어서 회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대 설치 간격은 150m를 초과할 수 없다).
- (2) 터널내부의 근로자 대피소에는 응급구호비품.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4. 터널내부 시계확보

- (1) 터널내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에는 항상 100m이상의 가시거리를 확 보하여야 한다.
- (2) 터널내부에서 분진, 유해가스, 내연기관 배기가스, 수증기 등의 과다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차량에 근로자가 충돌, 협착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환기 및 살수를 하여야 한다.